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주민복지과장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(안)

의안 번호	2021 -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2021. 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. 12. 31일에 만료됨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관계규정의 준용 대상인 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6조의2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

나. 관계규정의 변경

- 노인복지담당 → 노인정책담당(안 제13조제1항제2호)

- 대차대조표 → 재무상태표(안 제14조제2항제2호)

- 「고령군 재무회계 규칙」 → 「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(안 제5조)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10.06.~2021.10.26. 기간 중 의견 없음

- 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마. 규제영향분석 결과 : 해당없음
- 바. 기타 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사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 통과(2021.11.11.)

고령군 조례 제 호

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중 “2021. 12. 31 일”을 “2026. 12. 31일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“노인복지담당”을 “노인정책담당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2호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고령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1. 12. 31</u> 일로 하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6. 12.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회계관직 지정)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2. 지 출 원 : <u>노인복지담당</u></p>	<p>제13조(회계관직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2. ----- <u>노인정책담당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기금결산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. (생략)</p>	<p>제14조(기금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재무상태표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집행은 「고령군 재무회계 규 칙」이 정하는 규정	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「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 -----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주민복지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216

관 련 법 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